학교문법에서의 품사분류*

이광정

目 次

- 1. 서론
- 2. 품사분류의 발전과정
- 3. '학교문법통일안' 제정의 배경과 과정
- 4. 품사분류의 보편화 경향과 보편화 체계 마련
- 5. 학교문법의 품사체계에 대 한 검토
- 6. 결론

]. 서론

학교문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규범(prescriptive, normative)을 만들어 이 틀에 맞도록 지시하고 명령하는 문법이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이 정해지며, 교화적 태도를 가지며, 일상의 생활에서 실용되는 실질적(pratical)인 의미를 가지는 문법이다. 이에 반하여 學問文法(scholarly)은 문법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여 체계화하는 理論文法的(theoretical)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자연히 記述文法(descriptive)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어문법 연구사에 등장하는 품사분류는 어떠한 성격의 문법연

^{*} 본 연구는 1994년 10월, 10월의 문화인물 一石 李熙昇의 학문에 대한 학술발표회의 기획 논문인데, 발표 예정이었던 「周時經學報」의 출판 지연관계로 본지에 게재함. 성격상 李光政 (1987)의 내용과 중복되는 바 있음을 밝혀 둠.

구이었나?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행 학교문법체제가 만들어졌나?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의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결론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1)

국어 품사분류의 연구는 1832년 지볼트의 단편적이고 초보적인 연구를 상한 선으로 하여 현재까지 160여 년의 연구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동안의 연구업 적은 단행본으로 이루어진 것만도 100여 편이 넘고 단편적인 논문들도 여러 편이 있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학교문법적인 실용적 특징을 그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3년 학교문법 통일안 이전까지의 품사론은 일부 단편적인 논문과 대학교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학교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이론문법적인 것도 근본 바탕은 학교문법을 전제한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연구사에 등장하는 전 자료들을 학교문법서로 삼아 논의하여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그 동안에 연구되었던 종래의 업적들을 시대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현행 학교문법 체계까지의 이행과정과 현행문법에서의 품사분류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검토의 순서로 글을 전개하기로 한다.

¹⁾ 품사란 본래 그리스어인 more tou logou("part of sentence" 또는 "part of Phrase")를 part of speech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Dinneen, 1967, 92) 품사분류는 그리스의 스토아학파에서 처음 4품사로 분류되었다가 후에 5품사로 분류된다.이후 Alexandria學派(B. C.300-150)의 法典的인 연구서인 Dionysious Thrax(B.C.100)의 문법(Grammar)에서 본격화된다. 그는 이 문법서에서 '단어는 문장의 가장 작은 부분이며, 이들 단어들은 구성을 필요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名詞, 動詞, 分詞, 冠詞, 代名詞, 前置詞, 副詞, 接續詞의 8품사로 분류하였다.이들 8품사의 개별항에서는 현행문법에서 논의되는 문법사항들이 이미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名詞의 경우, 명사는 5가지 同時的인 특징 (simultaneous feature:문법적 일치)가 있다고하여 性(gender), 類型(type), 形態(form),數(number), 그리고 格(case)들에 대하여 分類, 例示하고 있다. 性은 男性, 女性, 中性으로, 類型은 原型과 派生型으로, 數는 單數, 兩數, 複數로, 格은 主格, 屬格, 與格, 對格, 呼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敍法, 人稱, 種類, 形態, 活用, 時制 등을 제안하였다.이 트락스문법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20세기까지 적용되어 왔다. 그의 문법내용은 대부분 그리스어의 형태론적 구분과 의미범주였다.

2. 품사분류의 발전과정

품사분류의 역사는 멀리 그리스의 트락스(Dionysious Thrax) 문법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이는 약간의 부분만 수정되어 로마에 전래되었고,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동안 서구 각국에 널리 보급 유포되는 과정에서 라틴 전통 문법을 확립하게 되었다. 16세기말 경에는 서구 각국이 이 문법을 토대로 하여 제각기 개별문법으로의 특정문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품사분류가 국어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832년 지볼트를 필두로 하여 여러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²⁾

이후 1900년경 유길준에서 처음 시작된 품사 분류는 여러 문법가들을 거쳐 1963년 학교문법 통일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양한 분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문법의 주대상이 되는 유길준에서 학교문법 통일안까지의 품사 분류의 양상을 4기로 시대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분류체계상의 특징과 내용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3)

^{2) 1832}년 지볼트로부터 유길준(1898) 문법이전까지의 서양인의 문법연구는 국어품사론사의 前段階인 構想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품사에 대한 논의를 한 사람은 16명을 헤아릴 수 있는데, 품사체계 전반을 보여주는 것은 달레 「朝鮮教會史」(1874), 리델「韓語文法」(1881), 스코트「언문말책」(1887), 위아르「朝鮮語口語法」(1889), 언더우드、「韓英文法」(1890), 스코트「朝鮮語入門」(1893) 등 6권에 불과하다. 자세한 것은 이광정 국 "문법 초기의 서양인의 품사연구"를 참조할 것.

³⁾ 국어문법학사의 시대구분으로는 金敏洙(1962, 1986) 4기 또는 5기로 나누는 견해와 姜 馥樹(1972), 南基心(1972), 高永根(1983) 등 여러 견해가 있다. 李光政(1987, 3-4)에 따라〈제1기〉; 導入, 收容期(1900-1930)-兪吉濬 문법에서부터 崔鉉培(1930) 문법 이전까지: 라틴문법의 차용시대로 系列的 문법의 특성을 보이며, 제1유형의 分析的인 품사론이 주류를 이루던 품사론의 시대.〈제2기〉; 反省. 摸索期(1930-1946)- 崔鉉培 문법에서부터 鄭烈模(1946)문법 이전까지: 국어에 합당한 품사체계의 모색기로 제2유형의 折衷的 품사론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제3기〉; 定着.深化期(1946-1963)-鄭烈模 문법으로부터 學校文 法統一案(1963)까지: 개인문법 체계의 확립과 통사론적 품사구조를 중시한 제3유형의 綜 습的 품사론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로 구분하기로 한다.

1) 〈제1기〉導入‧受容期(1900-1930) : 품사분류의 수용

1894년 갑오경장은 국어학 분야에도 큰 변환을 가져왔다. 종래에 언문이라 지칭하던 국자의 명칭이 국문으로 자리잡게 되고, 표기법에서도 國主漢從 내지는 國漢文混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895년에 개교한 漢城師範學校를 비롯하여 이후 여러 학교에서 국어국문을 가르치게 되는 것 등을 계기로 하여 우리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부용하여 대두된 것이 철자법의 제정, 우리 문자에 대한 재인식과 탐구, 그리고 문법연구 등이 주대상이었다.국어에 대한 연구의 방법이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의 실정에서 라틴 傳統 文法의 導入과 收容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서구문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품사분류가 문법연구의 주종을 이루었던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시기의 연구자와 업적은 아래와 같다.

兪吉濬(1898-1904, 1904이전, 1905, 1906경, 1907a, b, 1909)、崔光玉(1908)、周時經(1905, 1908경, 1909, 1910, 1911, 1913, 1914)、金奎植(19018, 1912)、金無詳(1909a, b, c, 1911, 1915, 1927)、李奎榮(1911-13, 1913경, 1916-1919a, b)、南宮檍(1913)、金枓奉(1916, 1922)、安廓(1917, 1922, 1923)、金元祐(1922)、李弼秀(1922, 1923)、李奎昉(1922)、李常春(1924)、姜邁・金鎭浩(1925)、朝鮮語學會(1930)、洪起文(1927)、李完應(1929)、李秉岐(1929-30) 등이다、

문법 내용은 일본문법의 영향을 받은 愈吉濬 문법과 자주적인 문법체계를 세운 周時經 문법과 영문법의 영향을 받은 金奎植 문법으로 대표된다. 이 중에서도 이 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문법은 分析的인 周時經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30년간에 해당하는 이시대의 품사분류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문법관은 대부분 교화적 입장의 규범문법적 성격으로 일관되어, 학교문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보편문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서구문법을 모델로

- 삼았고, 개별문법으로서 국어의 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자성이 周時經, 洪 起文. 李秉岐의 문법에서 제기된다.
- (2) 품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사분류가 된 시대다. 품사의 명칭도 "言語, 기, 씨, 字詞, 元詞, 品詞"등 11종으로 다양하게 불려졌고, 형태론적 단위로서의 단어와 통사론적 단위로서의 품사가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시되었 다.
- (3) 품사분류의 기준은 의미(meaning), 형태(form), 기능(function)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의미와 기능을 동시에 증시한 愈吉潜, 周 時經, 金熙祥, 南宮檍, 安廊, 李弼秀, 李常春의 문법과 형태와 기능을 중시한 金科奉, 洪起文의 문법, 형태를 중시한 李秉岐, 李完應의 문법, 의미를 중시한 李奎昉의 문법, 기능을 중시한 金奎植 문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4) 문법가의 수(16명)에 비하여 품사분류 체계(24)가 더 많은데, 이는 개인의 문법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수정판 문법서를 출간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 (5) 품사수는 6품사 체계에서부터 13품사까지 7종으로 분류된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체계는 9품사체계다.
- (6) 토의 처리에 따른 품사유형은 외형적으로는 1.2.3유형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체언토와 용언토를 독립품사로 인정하는 분석적인 제1유 형이다.
- (7) 품사의 명칭은 고유어계와 한자용어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문법관도 다르며 품사적 성격도 다르다. 이 시기에는 모두 20종의 품사가 설정된다. 단일명칭으로 불려지는 것도 있으나 용언토의 경우는 20개, 체언토의 경우는 17개로 달리 불리었다. 모두 20개의 품사가 86개의 명칭으로 불려졌으며 그 문법범주는 더욱 다양하여 혼란이 극에 달하였다 할 수 있다.
- (8) 서구 문법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어의 특성을 고려한 것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체언의 수 (number)와 성(gender)을 우리말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고, 관계대 명사의 설정과 같은 것도 그 한 예가 된다.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문법적인 고려의 대표적인 것은 待遇(polite)를 활용의 특성으로 설정한 愈吉溶, 金元祐 등과 체언의 특성으로 설정한 金黑群, 洪起文 등의 문법을 꼽을 수 있다.
- (9) 문법가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일본문법의 영향을 받은 兪吉濬 계열, 우리 말 자체의 독자적 문법체계를 수립한 周時經 계열, 영문법의 영향을 직접, 간 접적으로 받은 金奎植 계열 등이 있다. 대개 계열문법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도입 수용기의 문법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역사적인 의의를 넘어서 학문적인 입장의 성과도 많이가지고 있다. 특히 언어분석 단위의 발견과 문법체계 수립, 그리고 통사구조 속에서 품사론을 파악하려 했던 주시경, 김규식의 문법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제2기〉 反省·摸索期(1930-1946) : 품사분류의 발전

이 시기에는 〈朝鮮語學會〉를 중심으로 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표준 어의 사정, 외래어 표기법 제정" 등의 배경에 힘입어 문법연구가 학교문법적인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된다.

최현배의 "조선어품사분류론"(1930)을 계기로 하여, 토의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분류법이 시도되었고, 내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진전된 일면을 보이고 있다.

품사론 관계 업적은 아래와 같다.

崔鉉培(1930, 1934, 1937), 朴勝彬(1931, 1935, 1937), 朴相埈(1932), 姜邁(1932), 金允經(1932), 張志映(1932), 申明均(1933), 沈宜麟(1935), 權寧達(1941), 朴鍾禹(1946), 李常春(1946) 등이다.

이 시대는 전기에 비하여 시간적으로도 반에 불과하고, 업적도 3분의 1에 못 미치지만 내용적으로는 한층 심화되었다. 서구문법의 단순한 이식이라는 차 원을 벗어나 국어의 특성에 맞는 문법기술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단어관이나 문법관이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본격적인 품사분류의 기준이 마련되었고 국어의 특성에 맞는 분류법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다. 분류상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류체계는 6, 9, 10, 12 품사의 4가지 체계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체계는 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9품사 체계가 된다.

- (2) 토의 처리에 따른 문법유형으로는 체언토를 조사로 처리하는 제2유형이 대표적인 문법체계가 된다.
- (3) 외형적으로는 연구자가 11명이고, 연구업적도 15종에 불과한 적은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최현배 문법으로 인하여 한층 심화되고 체계화된 양상을 보 인다.

체언의 경우를 보면, '명사' 하나만으로 분류한 단일체계, '명사·대명사'로 분류한 2분체계, '명사·대명사·수사'로 분류한 3분체계가 다 등장하는데, 2분체계는 박숙빈 문법에서만 보이고, 3분체계는 최현배 등의 2유형문법과 상관을 이루고 있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의 2분형이 일반적이나 지정사, 존재사가 등장하여 3분 또는 4분체계를 이루기도 한다.

토의 처리는 체언토의 경우는 모두 조사로 처리하는 통일된 견해를 보이나 용 언토는 조사, 종지사로 2분하거나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숭빈 문법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등의 형태류를 품사로 인정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부사는 문법가 모두가 품사로 설정하는 보면적인 품사다.

관형사는 주시경 문법에서 처음 설정한 우리말 특유의 품사다. 이 시대에 와 서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다.

접속사는 접속조사와 접속어미를 접속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진전된 일면 의 박승빈 문법에서 찾을 수 있다.

- (4) 우리말 체계에 맞지 않은 서구 문법적 잔재가 많이 청산되어 체언의 성이나 관계대명사, 용언에서 분사에 대한 논의 등이 정리된다. 그리고 체언과 용언에 걸쳐 대우법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말의 특성을 갈파한 문법연구의 일단이라 하겠다.
- (5) 이 시대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등장하는 문법가는 崔鉉培, 朴勝彬, 朴相峻, 權寧達, 李常春이다. 먼저 박승빈 문법을 살펴보면 그의 문법은 외솔 최현배의 문법과 대립적인 입장에서 〈朝鮮語學硏究會〉를 대변하던 문법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선어말어미 부분을 조용사란 독립 품사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지정사와 존재사의 설정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최현배의 문법은 비단 이 시기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성된 대표적인 문법이다. 품사론 분야에서 가지는 사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1〉 첨가어인 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유형의 품사분류 체계를 수립하였다. 2〉 문법기술의 태도에 있어서는 규범문법적이나, 풍부한 언어자료 및 언어분석으로 이론문법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3〉 미흡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 본

격적인 의미의 단어와 품사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품사분류의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국어의 활용체계를 그 형태적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自格法,接續法,終止法으로 수립하였다. 자격법은 파생어미와 굴절어미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고, 접속법은 체언토와 용언토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접속사의 범주를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종지법의 설정은 종래의 종지사란 품사범주를 서법으로 처리하는 발전적 계기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종래의 문법에서 문제되어 온 보조용언의 문법범주 설정, 관계대명 사를 불완전명사로 범주 설정을 한 것, 보조어간이란 문법범주 설정으로 선어 말어미와 어말어미의 구분을 일찍이 이룩한 것 등은 큰 공적이다. 그러나 토를 단어로 인정하는 문제, 잡음씨의 품사 설정에 따른 논란, 접속사를 부사의 범주 에 포함시킨 것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제3기) 定着·深化期(1946-1963) : 품사분류의 정착

1946년 11월 미군정청의 국어교수요목에 따라 중등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문 법이 부과된다. 1946년 9월 1차로, 개인문법에 대하여 문교부 인정제를 실시 하여 7종의 문법서가 출간되고, 1956년에는 11종의 문법교과서가 출간된다.

1956년 경부터 비등하기 시작한 학교문법통일에 대한 요구에 따라, 1961년 12월에 통일안 작성에 착수한 문교부는 1963년 7월 불완전하나마 통일안을 확정 공포한다. 이후 이 통일안은 중학교에서는 1966년부터, 고등학교는 1968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품사론이라는 학문 분야의 연구를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학교문법에서의 품사론의 정착이란 결론을 가져왔다.

이 시대의 연구 업적은 다음과 같다.

정렬모(1946, 1948a.b), 박창해(1946), 최현배(1946, 1948, 1956a.b.c), 洪起文(1947), 柳在軒(1947), 김근수(1947), 장하일((1947, 1949a.b), 이영철(1948), 김윤경(1948a.b), 박태윤(1948), 李崇寧(1949, 1954, 1956a.b.c., 1960, 1961), 이인모(1949), 정인승(1949, 1955, 1956a.b.c.d), 이희승(1949, 1955, 1956), 沈宜麟(1949), 鄭暻海(1953), 金敏洙(1955, 1960, 1962, 1964), 최태호(1957a.b.c),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a.b), 학교문법통일안(19

63) 등이다.

이 시기는 6·25사변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15년에 불과한 기간이지만 문법 연구자도 23명이고 업적도 44면이나 된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내실을 거둔 품 사론 연구의 정착.심화기에 해당된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1) 단어와 품사의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의 문법기술로 품사분류가 형태론의 단계를 벗어나 통사형태론적 입장에서 연구되었다. 그런 연유로 문법기술에 있어 품사론에 앞서 통사론(문장론)을 기술한 김민수, 최태호, 김민수의 3인의 문법서가 나타났고, 정렬모, 정인승, 이희승, 장하일, 이인모 등의 문법도 통사론을 중시한 문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문법적인 문법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품사분류의 기준으로서 기능을 중시하는 문법 경향이 나타났다.
- (2) 품사분류의 유형적 특색은 체언토를 격어미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3유형의 분류법이 정렬모를 위시하여 다수 등장한다. 수사가 차츰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고 동사와 형용사를 동사로 통합시키는 정렬모, 장하일, 이인모의 문법이 국어문법학사상 처음으로 등장한다. 제3유형 문법의 일반화는 채언토의 분리성에 대한 지지보다 토가 독립적인 언어단위가 되지 못한다는 단어관에 입각한 것이다.
- (3) 품사수는 10품사 7품사 9품사 체계가 다수를 이룬다. 박태윤, 이승녕 문법에 서는 8품사 체계가 등장한다. 종전의 9품사 위주의 체계에서 3유형의 등장으로 품사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 (4) 이 시대에 등장하는 품사는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存在詞, 指定詞, 助詞, 後置詞, 終止詞, 冠形詞, 副詞, 接續詞, 感歎詞의 14종이다.이중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품사는 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감탄사의 9품사다. 이는 수사가 독립 품사로 많은 인정을 받게 되고 관형사의 품사적 지위가 확정되었다는 것, 접속사의 지지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 등을 뜻한다.
- (5) 이 시대에 들어오면 타인의 문법을 추종하던 계열문법적인 성격이 해소되고 비교적 보편화 경향을 띤 개인문법 체계가 형성된다. 또한 학교문법통일안을 통하여 그간의 문법을 의도적이긴 하나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4) 〈제4기〉安定. 履行期(1963-현재까지) : 품사분류의 통일

1963년 7월 문교부의 주도로 이른바 '말본파'와 '문법파'의 대립 속에서 '학교문법통일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1966년부터, 고등학교는 1968년부터 통일안에 의한 문법교육이 실시된다. 두 번에 걸친 검인정 형태의 문법교과서가 출판되고, 다시 여론에 따라 1985년 제1종 교과서로 통합・편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학교문법통일안' 제정의 배경과 과정4)

1) 배경

문법통일에 대한 쟁점은 1949년부터 이미 배태되었으니, 문교부에서는 용어를 "명사" 등의 한자식 이름과 "이름씨" 등의 고유어 명칭 사용을 동시에 허용하였다. 또한 문법체계는 각 개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 입학시험에서 제기된 일선교단의 통일문법에 대한 높아진 여론을 바탕으로 통일문법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10월부터 1966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 이른바 '말본파'와 '문법파'의 용어문제를 중심으로 격렬한 문법논쟁이 벌어진다.

1961년 10월 14일자로 군사정부 최고의회의 문법통일에 대한 지시를 받은 문교부는 동년 12월 8일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가 끝난 자리에서 문법가들로 하여금 그 방안을 성안케 하자는 결정을 보았다.

이후 문교부 편수국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 조사 과정을 통해 문법통일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국어학회〉에서는 동년 12월 29일 통일안 지지에 대한 건의를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국어국문학회〉에서는 1962년 1월 9일 임시총회를 열어 지지를 표명하는 종합된 의견을 최고회의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2년 교과서부터 학교문법을 통일하라는 최고의

⁴⁾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102-106 등 참조.

회의 지시를 1월에 재차 받은 문교부에서는 2월에 그 성안에 착수하였다.

시간적인 문제로 1962년부터 실시할 수 없음이 양해되고, 1962년 3월 7일 학교문법통일 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초안의 내용은 품사체계를 9 품사로 할 것과 용어는 한자와 고유어를 절충하되 품사 명칭을 한자식으로 할 것 등이었다. 이에 최현배는 문법용어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하며 3월 13일 반대의 내용을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이는 바로 한글학회의 입장 표명으로 대신하게 된다.

이 준비위원회의 안 가운데 쟁점은 품사 명칭에 쏠려〈국어학회〉와〈국어국문학회〉는 지지를 표명하였고, 한글학회는 반대에 나서게 되었다.〈국어국문학회〉는 이해 10월 7일 제5회 전국대회에서 이를 주제로 재차 토론하여 12월에다시 문교부에 건의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문교부는 1963년 2월 1일 국어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학계와 당국의 의견을 협의하게 된다. 논의의 초점은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해제와 학교 문법 통일'이었다. 이 가운데 문법 문제만이 채택되어 3월 18일부터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정식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날 3월 7일에 작성한 준비위원회의 안인 9품사 안이 채택되었다. 4월 3일에는 단어의 소속 품사와 통일된 용어를 결정할 차례였는데 위원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최현배가 퇴장하는 바람에중단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 전문위원회 구성이었다.

2) 전문위원회 구성

1962년 4월 10일 교육과정위원회는 문법교과서 저자 8명과 국어교육 관계자 8명 등 16명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국어교육 관계자의 선정은 朴昌海, 李應百, 趙文濟가 전형위원이 되어 선정하였다.

(1) 문법교과서 저자

崔鉉培*, 李熙昇, 金允經*, 鄭寅承*, 李崇寧(渡美 중 대리 李基文), (金敏洙・南廣祐・劉昌惇・許雄의) 공저자중 1명, 張河一*, 崔台鎬: 계 8명

(2) 국어교육 관계자

劉濟漢*(한글학회), 朴昌海*(연세대), 尹泰榮(한성고교), 李勳鍾(청량중고), 李應百(서울사대), 金亨奎(서울사대), 康允浩*(이화여대), 李熙福(문교부) : 계 8명

등 16명으로 되었으나 이승녕의 대리인에게는 표결권을 주지 않고, 공저자는 교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말본파(*표)와 문법파의 비율은 7:8이지만, 공저자 중에서 말본파로 교체되거나 비저자 중에서 한 명쯤 전향시킬 경우 역전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1962년 4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12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문법통일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심의회에 제출하였다.

3) 제정 과정 : 주요 결정 사항

- 제1회(4.15) 의장 이희숭 선출.
- 제2회(4.19) 단어의 개념 논의.
- 제3회(4.20)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토는 독립 품사로 보고 어미는 독립 품사로 보지 않는다"를 참석 10에 8:1로 채택.
- 제4회(4.24) "이다는 낱말이 아니다"를 참석 11에 6:5로 채택.
- 제5회(4.25)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각각 독립품사로 설정한다"를 참석 10에 3 차 투표에서 6:4로 채택하고, "존재사는 불인정"을 참석 9에 7:2 로 채택.
- 제6회(4.30) "접속사는 설정하지 않는다"를 재석 14에 8:6으로 채택.
- 제7회(5.1) 문장성분의 토의를 뒤로 돌리고 용어를 우선 토의 "용어는 절충하 여 심의 제정한다."를 재석 13에 7:6으로 채택.
- 제8회(5.3) 용어의 심의 원칙인 절충 방안 결정.
- 제9회(5.6) 소위원회(장하일, 김민수, 이용백)에서 용어, 분류 체계를 세워 제출케 하기로 결정.
- 제10회(5.8) 소위원회에서 일반용어, 세부용어, 국문법용어, 외국문법용어, 공통용어의 5종으로 분류 보고.
- 제11회(5.10) "공통용어를 5종으로 분류하여 표결 택일한다."를 재석 15에 8:7로 결정.

- (1) 품사:한자어를 재석 15에 8:7로 채택(유제한, 최현배, 김윤 경, 정인승 퇴장)
- (2) 말소리:고유어를 재석 11에 7:1로 채택(기권3)
- (3) 접사와 기타:고유어를 재석 11에 재투표 6:3으로 채택(기권 2)
- (4) 월:한자어를 재석 11에 6:3으로 채택(기권 2)
- (5) 월점:고유어를 재석 11에 7:1로 채택(기권 3)

제12회(5.22) 토의 종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문법통일안'은 9품사체계와 252개의 용어로 성안되었으나 욕설, 폭언, 난동 후 퇴장한 말본파의 반대투쟁이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5, 6월 달포에 지상을 누빈 논쟁은 1952년 5월 부산정치과동, 1953년 2월 경제과동, 1954년 7월 한글과동 다음 가는 것이었다.

문법논쟁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용어에 관한 것이 것에 초점이 되어 있었고 문법내용에 관한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663년 6월 18일 전문위원회의 초안을 상정하여 결정하고 이어 7월 25일 문교부 장관의 결재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말본파의 1963년 3월 국회청원, 1965년 6월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져 1966년 11월까지 후유증이 계속되었다.

국회 청원 관계는 국회에서 4월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16일 본회의에서 광범한 여론조사 후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문제가 문공위원을 동원하여 정치문제화되자,

문교부 차관은 말본파의 최현배와 정인승 등에게 교과서 신청을 중용하는 유화책을 썼다. 그러나 중용했던 교과서가 1965년 4월 다 불합격 발표가 되자 격분한 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막후 교섭으로 말본파의 교과서를 추가로 접수하여 재심하고 1966년 1월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통일안에 준거한 교과서는 1966년 3월부터 중학교용부터 시작되었으나, 11월에 접수된 말본과의 교과서는 순우리말 용어를 팔호 속에 병기하였고, 최현배의 교과서에는 잡음씨의 설정이 예외로 허용되었다. 1967년 중학교용 교과서는 9종을 추가하여 16종으로 늘어났고, 과도기적 혼란은 1979년 2월까지 계속되

었다.

4) 문제점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문법통일안은 그 제정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통일안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또는 계파적인 이해관계에서 사실을 외면한 것이 많았다. 위의 결정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부분이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파벌에 따라 거수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인상은 차치하고라도 내용적인 면에서의 오류를 검토해야만 한다.

첫째 품사수의 결정이 선행하고 품사 선정이 뒤따랐다는 것은 전말이 뒤바뀐 결정이다. 즉 우리말에 합당한 품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 수는 자연스럽게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수를 먼저 정해 놓고 보니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9품사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넣느냐에만 주목하는 결과가 되어 심 도있는 논의가 생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통일문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 보다는 외적인 용어문제에 치중하여 역시 본말을 뒤엎는 결과가 되었다.

문법내용에 검토는 12차에 걸친 회의에서 단어의 개념, 토의 독립 품사 인정, 명사·대명사·수사의 인정, 지정사와 존재사와 접속사의 불인정에 한정되었다. 이상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우리말 체계에 맞는 심도 있는 품사체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문법범주 설정과 하위 분류체계에까지 대체적인 논의가 뒤따랐어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문법의 품사체계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뒤에서 하기로 한다.

4. 품사분류의 보편화 경향과 보편화 체계 마련

서구문법의 경우에는 품사분류를 한다고 하면 보통,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부사, 감탄사(noun, pronoun, verb, adjective,

preposition, conjuction, adverb, interjection)를 연상할 정도로 품사분류도 대부분 통일되었고, 그 범주도 일반화되어 있다. 즉 보편문법으로서의 품사체계가 성립되어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 문법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반에게 보편문법으로 인식될 만큼 보편화된 품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 문법의 경우도 1963년 '학교문법통일안'이 마련되어 이미 30년을 넘어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 품사체계가 부지불식 중에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보편적인 체계로 굳어져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인위적으로 마련하여 일반에게 교육된 품사체계로 서구의 자연발생적인 생성과 결과의 산물인 보편적인 체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서구문법은 2000년 이상을 시험하고 실용한 결과로 얻어진,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편화된 것임에 비하여, 우리의경우는 단 100년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대로의 검증 과정도 거치지 못하였다. 급작스럽게 대표자의 회의를 통하여 찬반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가운데, 휴회와 퇴장 등의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몇 사람 대표의 거수로서결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학교문법채계가 국민 일반에게 보편적인 품사체계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동안의 과정과 이들의 타당성 여부에 대 한 검증과 더불어 어떠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품사 체계인가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다시 재정립해야 할 당위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어에 맞는 보편적인 품사체계는 어떻게 도출해야 하나. 또 그 것은 어떠한 체계일까가 본 논문의 주요관심사이고, 또한 결론이 된다.

이상적인 체계 달리 말하여 한국어의 특성에 부합한 품사체계는 원리적으로 는 단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어떤 탁월한 한 개인에 의해서 제시되고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할 때 누구나 주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한 개인의 문법에서 그 전부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문법연구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과 나아가서는 전 경향의 흐름을 살피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서 1963년 당시 문법서를 저술한 특정 수의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그 이전까지 검토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나아가서 전체적인 경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보편화된 체계 마련을 위한 자료의 검토

우리 문법연구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보편적인 품사체계는 무엇인가의 해답을 위한 검토 자료는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연구사에 등장하는 모든 연구서 전부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문법가의 분류체계 중에서 대표적인 체계 하나씩을 추출하여 여기에서 보편적 체계를 뽑아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루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문법가의 업적에 따른 비중이 모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 폐기하였거나 수정한 품사체계가 포함된 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본 논 고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취하여 보편화 자료를 마련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이 는 일례로 많은 연구업적물이 있는 최현배의 경우나, 단 하나뿐인 이인모 등의 문법이 동일시되는 약점이 있으나, 폐기·수정한 문법체계는 제외시킨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 일례로 주시경의 경우는 5가지의 품사체계로 변동이 되는데 대표적인 체계는 마지막의 6품사체계로 대표를 삼는 것과 같은 것이다.5)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체계를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

- (1) 김규식(1908) : 9품사-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형동사·후사·부사·접 속사·감탄사
- (2) 유길준(1909) : 8-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조동사·첨부사·접속사·감 탄사
- (3) 남궁억(1913경) : 9-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후치사·토·부사·접속사 · 감탄사
- (4) 주시경(1914) : 6-임·움·엇·겻·긋·잇

⁵⁾ 주시경의 품사분류체계는 7품사체계에서 시작되어 6품사체계로 되고, 다시 2가지의 9품 사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6품사로 되는 등 5가지의 분류체계의 변동이 생긴다. 「국어문법」 (1905) : 言分, 교본「말」(1908) : 6體, 「고등국어문전」(1909) : 9體, 「국어문법」(1910) : 9기,「말의 소리」(1914) : 6씨(이광정 1987. 65-70)

- (5) 김두봉(1916) : 9-임·움·엇·겻·맺·언·억·잇·늑
- (6) 이규영(1920) : 9-입·움·엇·금·만·언·억·잇·늑
- (7) 이필수(1922) : 9-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부사·접속사· 감타사
- (8) 이규방(1923) : 13-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금지사·부정사·호 용사·조사·조동사·부사·접속사·감탄사
- (9) 안확(1923) : 10-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동사·조사·부사· 접속사·감탄사
- (10) 강매(1925) : 7-이름말·움말·몰말·도움말·겻말·닛말·늑김말
- (11) 이완용(1929) : 11-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존재사·조사·조용 사·부사·접속사·감탄사
- (12) 이병기(1930) : 7-명사·동사·형용사·조사·부사·접속사·감탄사
- (13) 박상준(1932) : 9-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부사·접속사 · 갂타사
- (14) 장지영(1932경) : 9-님씨·움씨·얻씨·경씨·맺씨·언씨·억씨·억씨·닛씨·늑
- (15) 최현배(1937) : 10-이름씨·대이름씨·셈씨·움직씨·그림씨·잡음씨·토씨 ·매김씨·어찌씨·느낌씨
- (16) 박숭빈(1937) : 12-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존재사·지정사·조사·조 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사
- (17) 권영달(1941) : 6-명사·동사·형용사·조사·부사·감탄사
- (18) 이상춘(1946) : 6-명사·동사·형용사·후치사·부사·감탄사
- (19) <u>정렬모(1946)</u> : 5-명사·동사·관형사·부사·감탄사
- (20) 장하일(1946) : 5-임자씨 · 풀이씨 · 매김씨 · 어찌씨 · 느낌씨
- (21) 흥기문(1947) : 10-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후치사·종지사·부 사·접속사
- (22)김근수(1947) : 13-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존재사·지정사·조사·조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사
- (23) 이영철(1948) : 10-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종지사·부사 · 접속사·감탄사
- (24) 김윤경(1948) : 9-임씨ㆍ움씨ㆍ언씨ㆍ겻씨ㆍ맺씨ㆍ언씨ㆍ억씨ㆍ잇씨ㆍ늑씨
- (25) 박태윤(1948) : 8-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감탄 사

- (26) 이인모(1949) : 6-임자씨 · 풀이씨 · 토씨 · 매김씨 · 어찌씨 · 풀이씨
- (27) 심의린(1949) : 13-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존재사·지정사·조 사·조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사
- (28) 정경해(1953) : 9-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토·부사·접속사· 감탄사
- (29) 정인숭(1956) : 7-이름씨ㆍ움직씨ㆍ그림씨ㆍ토씨ㆍ매김씨ㆍ어찌씨ㆍ느낌씨
- (30) 이희숭(1956) : 10-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존재사·조사·관형사·부 사·접속사·감탄사
- (31) 최태호(1957) : 7-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사
- (32) 이숭녕(1960) : 8-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감탄 사
- (33) 김민수 외(1960) : 7-명사ㆍ동사ㆍ형용사ㆍ관형사ㆍ부사ㆍ접속사ㆍ감탄사
- (34) 김민수 (1960) : 7-명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타사
- (35) 문교부(1963) : 9-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조사·관형사·부사 ·감탄사

이상 우리 문법연구사에 등장하는 품사체계는 35개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6)

우리는 이 보편화 자료에서 몇가지 사실을 유도해 낼 수가 있다.

첫째 품사수는 5품사에서 13품사까지 있으나 다수의 지지를 받는 품사수는 9품사(29%), 7품사(17%), 10품사(14%) 동이다.

둘째 토의 처리에 따른 분류유형은 1유형:19체계(54%), 2유형:9체계(26%), 3유형:7체계(20%)로 제1유형이 가장 많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제1기에는 제1유형이, 제2기에는 제2유형이, 제3기에는 제3유형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문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토의 처리 문제에 대한 시사를 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시기적인 면을 고려할 때 먼 과거보다는 현재 쪽에다 의미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⁶⁾ 위의 자료 가운데 몇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외시켰다. 최광옥의 품사체계는 유길준의 그것과 동일하며 유길준 문법으로 추정되어 제외시켰고, 김원우의 문법은 주시경 문법이고, 박종우와 박창해의 문법은 최현배의 문법이며, 신명균의 문법은 장지영의 문법 그대로이므로 제외시켰다.

토의 처리는 독립품사로 설정하지 않고 격어미로 처리하는 제3유형이 시대적인 흐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품사는 전기간 동안 모두 21종이 설정되는데 각 품사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 사	제	1 기	7	127	제	3 7]	좋	합
1. 명사	26체	계 100%	6체	계 100%	17체:	계 100%	35체7	引 100%
2. 대명사	7	59	2	50	10	59	20	57
3. 수사	4	33	2	33	6	35	12	33
4. 동사	12	100	6	100	17	100	35	100
5. 형용사	12	100	6	100	14	82	32	91
6. 존재사	1	8	1	17	3	18	5	14
7. 지정사			2	33	2	12	4	11
8. 형동사	1	8		·			1	3
9. 조 용 사	1	8					1	3
10. 금지사	1	8					1	3
11. 부정사	1	8					1	3
12. 호응사	1	8					1	3
13. 조사	8	67	6	100	11	65	25	71
14. 후지사	2	16			2	12	2	6
15. 어미전체	7	58	3	50	2	12	12	34
16. 종결어미	3 -	25	1	17	3	18	7	20
17. 연결어미	1	8	1	17	1	6	3	9
18. 관형사	2	17	3	50	14	82	19	54
19. 부사	11	92	6	100	17	100	34	97
20. 접속사	12	100	3	50	9	53	24	69
21. 감탄사	11	92	6	100	17	100	34	97

간단한 이 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기간 동안에 무려 21개의 품사범주가 설정되는데 이 중의 대부분은 전반적 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품사라는 것이다. 形動詞, 助用詞, 禁止詞, 否定詞, 呼 應詞 5품사는 단 한 사람의 품사체계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後置詞, 指定詞, 存 在詞 등도 소수의 지지를 받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품사는 보편성을 띤 국어의 품사다'라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마련할 수 있다.7)

2) 시대별 보퍾적 품사체계

도	입 기	수 (용 기	정 경	박 기	좋	함
시대별	보편화	시대별	보편화	시대별	시대별	시대별	보편화
자료							
명사							
-	대명사						
-	-	-		수사	_	_	-
동사							
형용사							
- 1	-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 1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							
종지사	-	-		-	_	-	-
8품사	8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9품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 품사분류의 대표적인 체계는 품사수에 있어서는 8품사 또는 9품사체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11개의 품사 중 종지사의 경우는 제1기에 지지를 받았다가 살아지고, 수사의 경우는 정착기의 시대자료에만 등장한다. 접속사의 경우는 정착기에 잠시 빠지나 전체적으로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어

⁷⁾ 위의 보편화 자료만으로는 각 시대의 특징을 살필 수 없고, 또 보편화 자료는 대표적인 자료만의 제시이므로 생략된 부분을 무시하는 결과도 되겠기에 두 가지 자료를 대비시켜 보편성과 객관적 타당도를 기하기로 한다.(이광정 1987, 235-239 참조)

느 것이 우리 품사체계를 대변하는 것일까. 1960년대를 시점으로 살펴 볼 때 전시대를 대변하는 품사체계는 종합부분에 제시된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사·조사"의 9품사체계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법연구사에 등장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렴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삼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산술평균적인 결산과 함께 언어 내면적인 특성과 연구의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문법체계는 이같은 과거 문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1963년 당시 문법교과서 저자들을 중심으로 간략한 논의 끝에 거수로 표결하여 얻은 문법이다. 그러면 위의 보편화 품사체계와 학교문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문법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품사체계를 결론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3) 보편화 체계에 대한 검토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사·조사의 9품사체계는 문법연구사의 전품사체계를 그 대표성에 따라 수렴한 것이므로 이 자체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토의처리에 관한 것이다. 우리말에 있어서 토의 처리문제는 초창기에서부터 현재에이르기까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토란 무엇인가란 새삼스러운 질문이듯이 토는 신라 설총에까지 소급될 수 있는 용어로 우리말의 체언과 용언의 뒤에 첨부되어 실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문법요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토를 단어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등 그 이론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이른바 제1.2.3의 문법유형이다.8)

⁸⁾ 만는 한문을 읽을 때 글뜻을 이해하기 쉽게 한문 어귀 아래 붙인 조사나 용언의 활용형을 뜻한다. 口訣 또는 입것이라고도 한다. 이 토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것이나 문헌상처음 나타나는 것은 〈세종실록〉 10년 윤4월 기해조에 "凡讀書以諺語節句讀者俗謂之吐"이

제1유형은 초기의 방안으로 주시경 문법에서와 같이 체언토와 용언토 모두를 독립품사로 인정하는 분석적인 방법이다. 제2유형은 체언토는 독립품사를 인정하되 용언토는 인정하지 않는 절충적인 방안으로 최현배 문법이 대표적이다. 제3유형은 정렬모 문법에서 제기된 것으로 토를 모두 격어미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데 결론은 자명해진다. 전 시대의 검증을 거친 후 정착기의 대표적 견해가 된제3유형을 택해야 한다고. 이는 시대적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현재성이란 외형적인 이유 말고도 내면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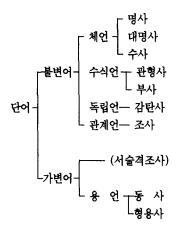
토를 독립품사로 인정하게 된 근본적인 단서는 토가 실사에서 분리될 수 있는 교착어적인 우리말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체언이나 용언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 품사로의 인정이 또한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분리성과 함께 독립성이다. 독립된 의미와 기능의 자격이 없이는 품사로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용언토가 독립성이 부족하여 독립품사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체언토도 역시 독립 품사로의 자격이 불충분한 것이다. 조사의 경우 체언과의 분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체언과 조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덩어리로서 쓰이는 언어단위다. 품사란 사전 속에 담겨 있는 死藏된 어휘목록이 아니고, 살아 있는 말 즉 行用言語 속에서의 단어의 문법적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품사론은 형태론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사론을 바탕으로 해서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살펴 볼 때 모든 명사는 반드시 조사를 가져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조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零形態로서의 체언의 성립이 가능한 것 뿐이다. 그러나 체언토는 체언 없이 그

다. 현대문법에서 토에 대한 언급과 함께 특색 있는 문법체계를 이룩한 문법가는 金熙祥이다. "어떠한 학설에는 토를 토씨 흑 助詞이라 한다". 吐이라 일컬음은 원래 吏吐에서 비롯하야 온 말이다. …薛聰이라 하는 큰 선비가 관아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때의 방언으로지은 문자를 支讀이라 일커르었고 또 吏吐이라도 하였은 즉…(김희상. 울이글틀 33-34: 표기는 필자가 현대표기로 고치었음). 김희상은 토를 체언토와 용언토로 구분하고 의미와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토의 문법의 창시자다.

성립이 불가능한 문법소다. 그러므로 조사의 독립품사 설정은 불가한 것이다. 이는 여타의 다른 품사들과 비교하여도 쉽게 판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를 제외한 8품사체계를 우리말의 대표 체계로 해서 좋을 것이다. 결론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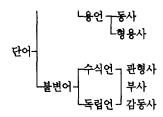
5. 학교문법의 품사체계에 대한 검토

현행문법체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9품사로 되었다.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1985.60)

참고로 북한의 품사분류 체계를 대비시켜 남북한문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통 일시대에 대한 예측도 함께 해 보기로 하자.



(고신숙:〈조선리론문법〉참조)

먼저 통일문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현행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 기로 한다.

(1) 첫째 우리 문법에서 가장 많은 논점이 되었고, 아직도 결말없는 것은 토의 품사처리 문제다. 학교문법통일안 제정과정에서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은 단어에 개념에 대한 논의와 토의 처리에 대한 문제였다.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단어의 정의"가 어떠한 결론으로 정리되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 모르나, 단어와 품사의 단위를 동일시하였다고 믿어지고, 이들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어는 정적인 상태의 언어구성 단위라면 품사는 동적인 상태, 달리 말하여 행용언어(performance language)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언어단위임을 이미 말했다. 그런 이유로 품사론은 통사론을바탕을 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 문법적인 의미, 문법적인 형태에 따라 그 분류의 기준을 삼는 것이다. 이것이 토의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의 의문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즉 토를 독립품사로 인정하는 쪽의 견해는 실사로부터 분리되느냐 않느냐의 문제에서 분리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로 독립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토가체언에서 분리는 된다 하더라도 자립성이 없다는 데 논점을 두고 있는 견해다. 결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단어의 정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언어분석에 남다른 이론의 선구자들인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을 위시하여 대부 분이 단어를 독립된 의미단위로 보고 있다.⁹⁾

^{9) (1)}단어는 궁극적으로 독립된 意味單位(sense-unit)다.(H. Sweet, 1898) (2)단어는 轉位 가능한 最小記號單位(minimal permutable unit)다.(L.Hjelemslev, 1928) (3)단

"단어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다. : A word is free form which dose not consist entirely of(two more) lesser free form : in brief A word is a minim um free form".

(Bloomfield, 1933, 178)

"그 형태의 전후에 休止(pause)가 있고 ,그 형태의 중간에 휴지가 올 수 없는 문의 일부이다".

(Hockett, 1958, 167)

일반적으로 단어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1)獨立性을 표준적인 기준으로 삼고, 2)발생의 多樣性.(예: boys는 주어에도 목적어에도 사용되는데 -s는 어미에서만 나타난다. 3)순서의 固定性. 4) 다른 단위의 삽입이 불가(greenhouse) 등을 들고 있다.(이철수. 1981, 125-127)

단어란 무엇보다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분리성이란 독립성에 한 속성일 뿐 그 자체로 단어를 성립시키는 요건이 되는 것이아니다.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독립이 전제될 수 있어야만 단어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말의 토는 이 문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말의 토의 경우는 주지하는 대로 체언토의 경우는 비교적 분리성이 크고, 용언토의 경우는 분리성이 약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여 독립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엄밀한 의미에서 토의 자립성 여부가 아니라 그 앞에 오는 요소인체언과 용언의 자립성 여부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체언은 토의 도움 없이도성립이 가능하나 용언의 경우는 토의 도움이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한 문법요소

어는 最小의 自立形式(minimal free form)이다.(L.Bloomfield, 1933) (4)단어는 형태의 앞뒤에 휴지가 있고,그형태의 중간에 휴지가 올 수 없는 문장의 일부다.(C.F. Hockett, 1958) (5)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련의 音群과 일정한 의미와의 결합 (association)이다.(A.Meillet, 1952) (6)단어는 통사론의 요소로서 최소기호(minimal signs)가 된다.(M.Aronoff, 1976) (7)단어는 문장에서 轉位 가능한 의미단위로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最小 自立語를 말한다.(Hans Marchand, 1969) (8)단어는 형태적 단어(morpheme), 어휘적 단어 (lexeme), 의미적 단어(sememe)로 나뉜다.(S.M.Lamb, 1969) (9)단어는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語彙素(lexeme), 語形word-form)에 관한 초분류적 용어다.(L.Bauer, 1988) (10)단어는 非循環的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層位에 대하여 부여되는 명칭이다.(Chomsky-Halle, 1968), 李結珠(1993) 70-73.

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채언토와 용언토의 성질의 차이처럼 해석하고 체언 토를 독립품사로 결정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용언의 어간이 용언토의 도움을 받아야 성립된다는 것은 용언토가 용언의 일부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증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토들과의 치환이 가능하다. 이 대치성은 토의 분리성, 달리 준독립적인 성격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체언토의 경우도 용언토와 유사한 양상을 가진다. 즉 체언은 토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오해하기 쉬우나 행용언어에서의 경우 체언에는 토가 일종의 필수요소(obligatory element)로 간주할 수 있다. 토를 안 쓴 경우라면 이는 영형태(zero morph), 달리는 생략형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토를 독립품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역사적인 근거는 토를 격어미로 처리하던 정착기의 대표적인 토의 처리 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용언토를 독립품사로 인정하던 것이 도입기 문법의 특색이었고, 체언토를 조사로 인정하던 것이 제2기 문법의 특색이었던 것과 같이, 제3기의 격어미설은 발전적 차원에서 얻어진 문법연구사의 결론이 된다. 이를 우리 문법체계에 반영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인 동시에 당위적인 결과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는 언어 외적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문법체계의 토의 처리방법에서 어떤 시사나 나아가서 통일문법 시대에 대비한 통일안의 마련의 관점에서도 학교문법에서의 체언토 처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이다.

(2) 토의 문제 다음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품사는 접속사다. 접속사는 회랍 문법시대에 명사, 동사와 함께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품사이기도 하다. Thra x는 "접속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우리들의 사상을 통합적으로 연결시키고,담 화의 공백을 채우는 단어의 한 종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8가지로 하 위분류 하였으니 繫合接辭, 異接的接辭, 條件接辭, 目的接辭, 質問接辭, 推論接 辭, 附加的接辭가 그 예다.10) Dinneen은 트락스가 유일하게 의미론적 정의만

¹⁰⁾ 접속사가 우리말에서 성립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는데 참고자료로 분류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본디 회랍어 용례들을 영어로 바꾸어 놓은 곳이다.

⁽¹⁾계합접사는 "그리고(and), 또한(also), 그러나(but)"의 예와 같이 계속적인 담화를 연결시킨다. (2)이적접사는 문장을 연결시키지만" 또는(or)"의 예처럼 그들의 내용을 분리

으로 분류한 품사라고 하였는데, 이 때 의미란 기능적인 의미를 지정한 말이다. 우리말의 품사분류에서도 접속사는 명사 동사 등과 함께 초창기부터 있던 오 래된 품사다. 제1기에는 모든 문법가들이 100% 지지를 했던 품사이나 최현배 계 문법에서 이를 부사 속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50%의 지지를 받다가 다시 제 3기에서 지지기반이 확대되어 53%의 지지를 받던 품사다. 통일안 결정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6의 결과로 부결된 품사다.

그러면 우리말에는 접속사에 속하는 어휘군들이 없다는 것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사 속에 내포시킬 수 있는 부사와 공유적인 속성의 어휘에 불과한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 우리말의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또는, 말하자면, 그런데"… 등등 수많은 어휘들은 일찍이 트락스 문법에서 제기했던 접속사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단어들이다. 흑자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할는지 모르나 결코 관형사와 비교하여 적지 않을 것이고, 잡음씨라 하여 단 두 개의 단어만을 품사로 제시한 경우가 있고, 존재사의 경우도 4개의 수를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사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말 접속사는 그 구실이나 의미 형태에서 특징을 가지지 못하는 부류의 단어군인가? 이것 역시 그렇지 않다. 부사는 말 그대로 용언에 첨부되는 수식어이다. 물론 개중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키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것이고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어를 접속시키기도하고, 구를 접속시키기도 하고, 많은 경우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킨다. 이 접속의 구실은 회람문법에서는 감탄이란 의미범주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이

시킨다. (3)조건접사는 "만약에(if),…조차(even),…임에도 불구하고(though), 만약 그렇지 않으면(otherwise)"의 예와 같이 비사실적인 결과를 지시한다. (4)원인접사는"…하니 (when), 따라서(consequently),…이래(since),…하기 위하여(in other th at),…의 이유로(because of)"의 예와 같이 사실적 결과를 표현한다. (5)목적접사는" …하도록(so that) …하기 위하여(in other that),… 때문에(because of)"와 같이 목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6)의문접사는"…인지 어떤지(whether), 아마도(perhaps)"의 예와 같이 의문 스러움에 대하여 쓰인다. (7)추론접사는 "따라서 (consequently), 그러므로(therefore)"의 예와 같이 결론과 증거를 대기 위한 가정에 사용된다. (8)부가적접사는"이거 참(well), 물론(of course), 참으로(indeed), 당연히(natually)"의 예와 같이 습판적인 일로 운율적인 편의나 언어수식을 위하여 사용된다.

다. 즉 트락스는 명사·동사·분사·관사·대명사·전치사·부사·접속사의 8 품사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인 라틴어 문법인 Priscian의 문법에서는 명사·동사·분사·대명사·전치사·부사·감탄사·접속사의 8품사로 변경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품사체계의 바탕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우리말 접속사는 세계 모든 문법 범주와도 일치하는 오랜 전통을 가졌을 뿐 아니라, 현재 보편적으로 공통성을 가진 품사라는 점에서도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품사다. 부사가 수식 기능을 하는 반면 접속사는 접속기능, 달리는 문장에서독립성분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질적인 두 품사를 한 문법범주 속에 넣음은 불가하다.

(3) 수사의 독립품사 설정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의미적 분류체계다.

우리말에서 수사는 대명사나 마찬가지로 통사론인 문법범주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넓은 의미의 명사 속에 포함시켰던 것은 주시경을 필두로 하여 김두봉 등 여러 문법에서 일찍이 시도 되었던 분류법이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그 지지도 도 약했던 품사다. 제1기에는 33%, 제2기에도 33%, 제3기에는 35%의 지지 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 당하던 품사다. 그러나 그 의미범주의 독자성과 사 용빈도의 높음으로 인하여 독립품사로의 입지를 다시 얻게 된 것이다. 수사는 특히 기본어휘로서 외국어 습득과정의 제일단계가 되는 이유 때문에 리델과 스 코트의 문법을 제외하고는 선교사문법에서는 중요한 품사로 등장하게 된다.(이 광정, 1987, 294) 수사를 학교문법의 기본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수사가 학교문법에 있게 되면 학생들의 수개념 발달에 도움 이 된다는 주장 등도 있으나 수개념의 발달과 수사의 품사설정 여부와는 전혀 별개다. 다만 외국어로서의 수개념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국인에게도 수 에 관한 언어사용에서 바른 용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수 사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존재사. 지정사 등을 품사 설정했을 때 일부 도움이 되는 것과도 같은 성질의 문제다. 요는 8품사 또는 9품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의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접속사에 우선하 여 수사가 선택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8품사 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관형사·부사·접속사·감탄 사가 선정되어야 하고 9품사로 했을 때는 수사가 추가되어서 무방할 것이다.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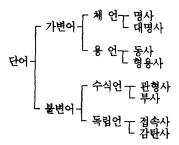
우리 문법연구사에 등장하는 품사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21개의 문법범주가 있다. 이들은 모두 6개의 대범주 속에 통합시킬 수 있다.

(1)명사(명사·대명사·수사·조사·후치사) (2)동사(동사·형용사·존재사· 지정사·형동사·조동사·금지사·부정사·호용사) (3)관형사 (4)부사 (5)접 속사 (6)감탄사

명사 속에는 "명사·대명사·수사·조사,후치사"를 포함시키고, 동사 속에는 "동사, 형용사, 존재사, 지정사, 형동사, 조동사, 금지사, 부정사, 호응사" 등과 활용어미"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외에 부사와 접속사를 통합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이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문법의 품사체계는 위의 6개의 범주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물론 이 6개의 품사체계로 대표하여 사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의 기술은 단순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편성과 함께 문법기술의 편이성도 고려해야 한다. 보편성이란 보편화 자료에서 추구하던 바와 같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언어 일반에 두루 통하는 세계어적인 공통성의 추구라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다.품사분류라는 것이 오랜 서구의전통문법에서 비롯되었고 널리 세계언어 일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살펴볼 때 더욱 그렇다.

현행 학교문법의 품사체계를 보편문법으로서의 수용 여부와 문제점은 이미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몇 개의 품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제시하면 아래와 같은 8품사 체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언어로서의 우리말과 특수언어로서의 우리말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우리말 품사체계는 위와 같아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1) 명사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이기도 하며 우리말 특성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 2) 대명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즉 우리말에는 서구어와 같이 대명사가 문법적으로 다양한 구실을 가지지 못하는 품사다. 그리하여주시경 문법에서와 같이 명사의 하위 분류로 처리하는 방안이 어느 면에서는 우리말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류법이다. 그러나 대명사는 세계언어 일반에 두루설정되는 성질과 우리 문법가 대부분이 설정했던 보편성에 따른다. 3) 동사는 세계언어 공통의 품사다.
- 4) 형용사를 동사에 포함시키는 정렬모, 장하일, 이인모 등의 예가 있으나 독립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용사의 서술성은 서구어와 다른 우리말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고 동사와 다른 통사적 특성을 가진다.
- 5) 관형사는 서구문법에는 없는 우리말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사로 주시경 문법에서 시작된 것으로 타당한 것이다.
 - 6) 부사는 보편성과 개별성 모두에 부합하는 품사다.
- 7) 접속사는 보편적이기도 하고 우리말에서도 타당한 품사설정이라 생각한 다.
 - 8) 감탄사는 보편성과 개별성 모두에 부합하는 품사다.

위와 같은 8품사체계는 학교문법에서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의 시간에 사용하는 8품사체계 즉 명사·대명사·동사·형용사·전치사

·부사·접속사·갂탄사의 체계와 일치함으로 해서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대비 적인 입장에서 언어의 특성도 차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 다 특히 토를 체언토와 용언토를 구분하여 격어미와 활용어미로 처리함은 여 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자립성이 없는 허사를 단어로 인정한다는 오류을 벗어나 고 단어=품사=어절=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하는 등식의 성립으로 하여 언 어단위와 현실과의 실용성에 또한 도움이 되며 나아가 통일시대 문법의 합치점 을 앞당기는 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고신숙(1987)「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고영근·남기심(1985)「표준국어문법론」탑출판사. 金敏洙(1954) "國語文法의 類型." 「국어국문학」10. _____(1957) "「大韓文典」及."「서울 大學校 論文集」 인문·사회과학 5. (1986) "學校文法論." 「徐廷範博士華甲紀念論集」 경희대 국문과. 李光政(1986) "古代그리스. 로마시대의 언어연구" 「경원대 논문집」4. (1987a) "國文法 初期의 西洋人 品詞研究." 「경원대 논문집」5. _____(1987b) 「國語品詞分類의 歷史的 發展에 관한 硏究」한신문화사. ____(1996) "북한문법의 품사론에 관한 연구."「華山金恩典敎授停年退任紀念論 文集 서울대국어과 李乙煥・李喆洙(1981)「國語文法論」 개문사. 李喆洙(1993)「國語文法論」개是小.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Carl Daring Back(1923),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The U niversity of Chicaco Press: London.

Francis P.Dinneen (1967). An Introduction to General Linguities. Holt, Rin ehart & Winston, Inc: New York.

研究文獻 資料年表

* 문헌의 번호는 탑출판사(1986) 「歷代韓國文法大系」의 번호임.

1. 導入・受容期

(1)	兪吉濬	(1898~1902)		01	「朝鮮文典」
(2)	兪吉濬	(1904. 6)	1	105	「朝鮮文典」
(3)	周時經	(1905頃)	1	107	「國文文法」
(4)	兪吉濬	(1905. 11. 14)		02	「朝鮮文典」
(5)	兪吉濬	(1906頃)	1	03	「朝鮮文典」
(6)	兪吉濬	(1907. 1~4)	1	106	「大韓文典」
(7)	兪吉濬	(1907頃)	1	04	「大韓文典」
(8)	崔光玉	(1908. 1)		05	「大韓文典」
(9)	金奎植	(1908. 9)		14	「大韓文典」
(10)	周時經	(1908頃)	1	08	「말」
(11)	兪吉濬	(1909. 2. 18)		06	「大韓文典」
(12)	金熈祥	(1909. 3. 20)		16	「初等國語語典」卷一
(13)	金熙祥	(1909. 3. 20)		17	「初等國語語典」卷二
(14)	金熈祥	(1909. 3. 20)		18	「初等國語語典」卷三
(15)	周時經	(1909頃)		09	「高等國語文典」卷一
(16)	周時經	(1910. 4. 15)		11	「國語文法」
(17)	李奎榮	(1911. 9)		112	「온갖것」
(18)	金熈祥	(1911. 10. 15)		19	「朝鮮語典」
(19)	周時經	(1911. 12. 19)	1	111	「朝鮮語文法」
(20)	金奎植	(1912. 9)		15	「朝鮮文法」
(21)	周時經	(1913. 9. 27)		12	「朝鮮語文法」
(22)	李奎榮	(1913頃)		113	「말듬」

(23)	南宮檍	(1913頃)		24	「조선문법」
(24)	周時經	(1914. 4. 13)		13	「말의소리」
(25)	金熈祥	(1915. 12. 1)		20	「朝鮮語」(最新實用 朝鮮百科大全)
(26)	김두 봉	(1916. 4. 13)	1	22	「조선말본」
(27)	安自山	(1917. 1. 20)		26	「朝鮮文法」(初版)
(28)	이규영	(1919頃)	1	114	「한글적새」ㄱ
(29)	이규영	(1919頃)	1	115	「한글적새」ㄷ
(30)	李奎榮	(1920. 7. 12)	1	27	「現今朝鮮文典」
(31)	安自山	(1922. 4. 5)	1	25	「朝鮮語原論」(朝鮮文學史)
(32)	金元祐	(1922. 4. 18)	1	28	「朝鮮正音大典」
(33)	李弼秀	(1922. 6. 30)	1	34	「鮮文通解」
(34)	李奎昉	(1922. 8. 15)		29	「新 朝鮮語法」
(35)	김두봉	(1922)		23	'집더 조선말본」
(36)	安自山	(1923)		26	「修正朝鮮文法」(再版)
(37)	리필수	(1923. 8.23)	1	35	
(38)	强買·金鎭	浩(1925. 5. 18)	1	31	「잘뽑은조선말과글의본」
(39)	金常春	(1925. 10. 28)	1	36	「朝鮮語文法」
(40)	洪起文	(1927. 1~6)	1	38	「朝鮮文典要領」
(41)	金熈祥	(1927. 4. 5)		21	「울이글톨」
(42)	李完應	(1929. 1. 23)	1	40	「中等教科朝鮮語文典」
(43)	李秉岐	(1929. 9~1930. 9)	1	41	"朝鮮文法講話"
(44)	朝鮮語研究	曾(1930. 1. 15)		32	「精選朝鮮語文法」

2. 反省・摸索期

(1)	崔鉉培	(1930. 12. 1)	1	44	"朝鮮語의 品詞分類論"
(2)	朴勝彬	(1931. 7. 30)	1	48	「朝鮮語講義要旨」
(3)	朴相埈	(1932. 1. 25)	1	51	「改正綴字準據朝鮮語法」
(4)	姜邁	(1932. 4. 20)		33	「精選朝鮮語文法」
(5)	한결生	(1932. 7. 13)		53	"조선말본"
(6)	張志暎	(1932頃)	1	56	「朝鮮語典」抄本
(7)	申明均	(1933. 12. 30)	1	57	「朝鮮語文法」
(8)	최현배	(1934. 4. 5)		45	「중등조선말본」
(9)	朴勝彬	(1935. 7. 2)		50	「朝鮮語學」
(10)	沈宜麟	(1935. 12. 15)	1	59	「中等學校 朝鮮語文法」
(11)	최현배	(1937. 2. 20)		47	「우리말본」
(12)	朴勝彬	(1939. 8. 28)	1	49	「簡易朝鮮語文法」
(13)	權寧達	(1941. 8. 20)		58	「朝鮮語文正體」

3. 定着・深化期

(1)	정렬모	(1946. 10. 20)		61	「신편고등국어문법」
(2)	박창해	(1946. 11. 1)	1	65	「쉬운조선말본」
(3)	최현배	(1946)		46	「중등조선말본 교수 참고서」
(4)	洪起文	(1947. 6. 30)	1	39	「朝鮮文法研究」
(5)	柳在軒	(1947. 7. 25)	1	66	「表解式國語文法국어 풀이씨가름」
(6)	김근수	(1947. 8. 15)	1	71	「중학국문법책」
(7)	장하일	(1947. 12. 1)	1	74	「중등새말본」

(8)	이영철	(1948. 1. 13)		78	「중등국어문법」
(9)	최현배	(1948. 3. 25)		67	「 중등조선말본 (초급학년씀)
(10)	김윤경	(1948. 5. 15)		54	「나라말본(고급용)」
(11)	김윤경	(1948. 7. 10)		55	「나라말본(초급용)」
(12)	박태윤	(1948. 5. 25)		73	「중등국어문법(하급용)」
(13)	정렬모	(1948. 9. 20)		62	「초급국어문법독본」
(14)	정렬모	(1948. 9. 20)	1	63	「고급국어문법독본」
(15)	李崇寧	(1949. 4. 1)		120	"古語의 音韻과 文法"
(16)	이인모	(1949. 8. 20)		77	「재미나고쉬운새조선말본」
(17)	장하일	(1949. 8. 25)	1	75	「표준말본(중학 1, 2학년)」
(18)	장하일	(1949. 8. 25)	1.	76	「표준말본(중학 3학년)」
(19)	정인숭	(1949. 9. 15)		79	「표 준중등 말본」
(20)	이회숭	(1949. 9. 19)		85	「초급국어문법」
(21)	沈宜 麟	(1949. 12. 15)		60	「改編國語文法」
(22)	鄭暻海	(1953. 11. 20)	1	87	「國語講義」
(23)	李崇寧	(1954. 12. 5)		88	「古典文法」
(24)	정인숭	(1955. 3. 10)	1	80	「표준 중등 알본교사용참고서」
(25)	金敏洙	(1955. 4. 1)	1	97	"국어문법"
(26)	최현배	(1956. 2. 15)		68	「중등말본 1」
(27)	최현배	(1956. 2. 15)		69	「중등말본 2」
(28)	최현배	(1956. 2. 15)	1	70	「중등말본 3」
(29)	정인숭	(1956. 3. 25)	1	82	「표준중등말본교사용지도서」
(30)	정인숭	(1956. 3. 25)	Ī	84	「표준 중등 말본교사용지도서」

(31)	李崇寧	(1956, 3, 20)	I 89) 「 중등 국어문법」
(32)	李崇寧	(1956. 3. 20)	1 90) 「고등국어문법」
(33)	정인숭	(1956. 4. 1)	I 81	「표준중등말본」
(34) (35)	정인승 이희승	(1956. 4. 1) (1956. 4. 5)	 83 86 	3 「표준고등말본」 「중등문법」
(36)	李崇寧	(1956頃)	1 91	「새문법체계의 태도론」
(37)	최태호	(1957, 3)	1 92	「중학말본 []
(38)	최태호	(1957. 3)	1 93	「중학말본Ⅱ」
(39)	최태호	(1957. 3)	1 94	「중학말본Ⅲ」
(40)	김민수, 남광우, 유창돈, 허웅	(1960.3.20)	1 95	「새중학문법」
(41)	김민수, 남광우, 유창돈, 허웅	(1960.3.20)	1 96	「새고교문법」
(42)	金敏洙	(1960. 11. 10)	98	「國語文法研究」
(43)	李崇寧	(1960. 3)	121	【 「고등국어문법(개정판)」
(44)	李崇寧	(1961)		「中世國語文法」乙酉文化社
(45)	문교부	(1962. 11)	1 99	「중고등학교국어문법지도지침」

(경원대)